

의안번호	2207971
의 퇴 인	권칠승 의원
회 답 일	2025. 4. 15.
추계번호	25A076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6조제5호 신설 (공동사업의 활성화)	상인이 시장등에서 개최하는 중고품 매매·교환 또는 예술품 전시·판매 등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26조제5호 신설 (공동사업의 활성화)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 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인 공동사업의 대상에 “시장등¹⁾에서 개최하는 중고품 매매·교환 또는 예술품 전시·판매 등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
 - 현행법 제26조²⁾는 상인이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해당 규정에 호를 신설하여 상인이 추진할 수 있는 공동사업으로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사업”을 명시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라 국비 및 지방비 예산으로 지원 가능한 공동사업의 범위에 중고품 매매·교환 또는 예술품 전시·판매 등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사업이 추가될 경우, 기존 사업의 재정지출이 증가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
 -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안의 내용과 유사한 사업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실시하여, 시장별로 지역특색과 연계한 관광상품 등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상품 홍보·마케팅 등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고 있음(국비 + 지방비 매칭)
 - * [참고자료]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현황
 - 개정안에 따라 공동사업 중 하나로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사업”이 명시되면 기존에 실시 중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예산이 증액되거나, 이와 별도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국가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1) 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이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품, 상표, 포장용기의 개발 및 디자인의 개선 등에 관한 사업
2. 구매, 물류,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에 관한 사업
3. 공동판매장의 설치 등 판로 지원에 관한 사업
4. 광고, 옥외광고물의 제작·표시·설치 등 시장등의 홍보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개정안에 따른 추계 대상은 기존 사업의 예산을 확대하거나 신규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나, 추계에 필요한 지원 기준 및 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려면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설됨에 따라 추가로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등의 수와 예산 지원 단가 등을 가정할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기존 지원 사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시행되었을 때 추가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등의 수를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며, 재량지출성 사업의 특성상 지원 단가나 한도도 재원 추가 투입 규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현 시점에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국비(40~60%)에 지방비(60~40%)를 매칭 지원하며, 시장당 2년간 국비와 지방비를 합하여 최대 10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2025년 예산상 지원 목표는 73개 시장으로 예산액은 총 175억원임
 - * [참고자료]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현황
 - 안 제26조제5호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한 “중고품 매매·교환 또는 예술품 전시·판매 사업”을 실시 중인 전통시장 등은 없으며, 과거 지원 사례 또한 없음³⁾
-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인 공동사업의 범위에 “시장등에서 개최하는 중고품 매매·교환 또는 예술품 전시·판매 등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는 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

3)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의견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na.go.kr

[참고자료]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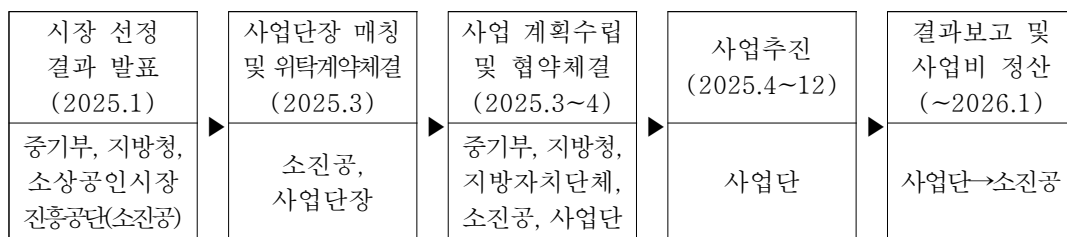
□ 사업개요

- *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154-304) - 특성화시장 육성(내역사업)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내역사업)
- **(목적)**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 시장 고유의 특장점 집중 육성(2008년~)
- **(지원대상)** 전통시장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중 상인조직 및 특성화 역량을 보유한 곳
- **(국비 지원규모)** 2024년 80곳, 200억원 → 2025년 73곳, 175억원
 - **(조건)** 국비(40~60%*), 지방비(60~40%) 매칭
 - *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국고 보조율) 최대 ±10% 차등 지원
 - **(한도)** 시장당 2년간 최대 10억원(국비 + 지방비) 이내 지원
 - **(2025년도 예산 산출근거)** 73곳 × 479백만원 × 50% ≒ 17,500백만원

□ 사업내용

- 시장별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단」 구성하여 콘텐츠 개발, 지역상품 육성 등 시장별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 **(특화 콘텐츠 개발)** 지역특색(문화, 관광, 역사)과 연계한 관광상품, 체험, 축제 등 문화 콘텐츠 개발
 - **(지역 상품 육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대표상품 개발 또는 개발 완료된 상품의 홍보마케팅 등 판로개척 지원
 - **(사후관리)** 사업 종료 이후 안정적 인계 및 성과정착 유도 방안 지원

□ 사업 지원체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